

停電에 따른 需用家の 被害補償 問題에 對하여

Compensation for Power Failure

朴 俊 河

韓國電力公社 營業部 營業計劃課長代理

1. 電力事業의 特性和 停電發生의 類型

電力事業은 一般製造企業과는 달리 몇가지 特性을 가지고 있다. 그 特性을 大別하면 公益事業으로서 特性 基幹産業으로서의 特性, 設備事業으로서의 特性, 獨占事業으로서의 特性을 들 수 있다. 이러한 特性은 電力外에도 鐵道 通信 電話 水道事業에서도 볼 수 있으나, 電力事業은 그 製品을 貯藏할 수 없는 즉 電氣는 生産(發電)과 同時에 消費가 이루어지는 特質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發電所 變電所 送配電線路等の 龐大한 設備를 設置하고 複雜多岐한 設備를 항상 最適으로 稼動시켜 電氣를 供給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비中 一部の 事故는 곧바로 停電으로 連結되는 獨特한 一面이 있다. 韓電의 境遇 83年末 現在 總資本의 85%以上을 固定設備로 하고 있고, 全國에 50여개소가 넘는 發電所와 160 만 km의 送配電 電線路를 運營하고 있다. 電氣事業者는 이러한 龐大한 設備를 恒常 最適狀態로 維持 運轉하여 停電없는 良質의 電力供給을 해야 할 義務가 있으나, 停電에 對備하는 二重 三重의 重複設備를 갖추어 技術의 由로 停電이 없도록 對備하지 못하는 것은 값싼 電氣를 供給해야 하는 問題와 相衡

되는 裏面이 있기 때문이다. 電力事業者가 需用家에게 주는 不便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는 停電은 電氣事業者로서는 最善의 努力으로 豫防하여야 하나 設備의 龐大性, 高度技術能力을 要求하는 面에서 恒時 發生可能性을 안고 있으며, 그 類型을 分類해보면 豫測可能한 停電 즉 意圖的 停電(供給停止等)과 豫測不能한 停電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電氣供給規程에서는 “停電(休電)時에는 그 내용을 신문이나 방송등을 통한 廣告, 公示, 기타의 方法으로 需用家에게 미리 通知”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긴급不得已한 境遇에는 例外”로 하고 있으며 (電氣供給規程 第42條) 電氣事業法和 電氣供給規程에서 나타나는 停電의 類型을 分類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豫告 可能停電

(1) 需用家の 責任있는 事由(供給規程上 電氣供給停止에 해당)

- 電氣料金等 義務를 이행하지 않을 때
- 法規를 違反하여 電氣를 使用하는 때
- 電氣使用設備가 保安上 危險할 때
- 法令으로 電氣供給을 禁하는 때

(2) 需用家の 責任이 아닌 事由(供給規程上 電氣供給中止에 해당)

- 動力資源部長官의 指示에 의한 때

- 韓電의 電氣工作物의 修繕, 變更 其他 工事上 不得已한 때
- 需給狀況 또는 電壓 및 周波數에 심한 불균형 또는 變動이 發生할 우려가 있을 때

나. 豫告 不能 停電

-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需給狀況 또는 電壓 및 周波數에 심한 불균형 또는 變動이 發生하였을 때
- 不可抗力의 非常災害가 발생한 때 (天災地變, 事變, 戰爭等이 포함)
- 偶發的인 事故로 電氣設備에 危害가 加해진 때 (車輛衝突 鳥類事故等)
- 韓電의 전기공작물에 故障이 發生한 때 (器機破損等 돌발사고)
- 需用家 電氣設備에 事故가 發生하여 그 事故의 波及으로 電氣事業者 設備에 危害가 發生한 때 이와 같은 多樣한 停電의 類型은 電氣事業의 事業의 特性에서 오는 것이며, 이는 크게 나누어 전기사업자의 統制可能한 경우와 統制不可能한 경우로 大別될 수 있고 이 가운데 주로 電氣事業者의 統制不能停電이 需用家와 電氣事業者間의 被害補償에 대한 紛爭의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問題를 여기에 提起하고 外國의 事例와 法律意見을 綜合해 보고자 한다.

2. 被害補償에 對한 制度와 그 解釋

電氣의 受給에 關한 基本的 事項을 規定하는 電氣供給規程等 44條에 「韓電의 責任있는 事由로 停電이 發生되지 않는 한 需用家가 받은 損害에 對하여 韓電은 賠償責任이 免除됨」을 定하고 있으며 停電의 原因이 「韓電의 責任있는 事由」란 韓電에 重大한 過失이 있거나 需用家에 損害를 줄 目的으로 의도적으로 制限 또는 供給中止를 하는 경우로 解釋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며, 通常의 電力事業 活動을 通하여 實施하는 制限이나 中止에 대하여는 電氣供給規程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賠償責任이 없는 즉 責任있는 事由에서 除外된다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 이 問題의

要諦라고 보는 「責任있는 事由」는 一般社會 通念과 民法原則에 따라 解釋適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責任있는 事由를 豫想하여 電氣供給規程에 모두 列擧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며, 外國의 境遇에도 關係法規에서는 열거함이 없이 一般私法에 맡겨 처리하고 있다.

※ 外國電力會社의 電氣供給規程上의 賠償責任에 關한 規程 例

區分 國別	日本	自由中國	美國	備 考
補償制度	없음	없음	없음	○停電으로 인한
免責制度	있음	있음	있음	보상을 할 수 없음
關係條文	80條	45條	14條	음을 명시

3. 辯護士의 法律意見

가. K辯護士의 見解

(1) 韓電이 電氣供給規程에 따라 需用家와 電氣需用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電氣事業法 第14條 規程에 따라 電氣供給義務가 생기고 이는 전기의 繼續的 供給을 目的으로 함으로 契約의 性格上 正當한 理由없이 停電, 斷電等 供給이 拒絕되거나 中斷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不法不當한 供給의 中止 또는 使用의 制限은 契約義務 違反이나 權利의 濫用 또는 不法行爲가 됨으로 被害者인 需用家에 對한 損害賠償責任이 發生함은 明白하다.

(2) 그러나 電氣의 特性(원천적인 不完全性)과 電氣事業의 公益性이나 特殊性에 비추어 事實上 無停電, 無事故로 電氣를 供給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므로 電氣需用契約締結에 있어 그 供給條件은 이러한 事情을 豫見하여 正確히 規程함을 要하며 이로써 當事者 雙方의 損害豫防에 最善을 다하여야 할 것이므로 韓國電力公社法 第26條, 電氣事業法 第14條 第15條 第17條와 同法施行令 第10條 3號等에 供給契約과 供給條件은 물론 兩 當事者의 責任限界等を 事前에 規程하도록 하여 電氣供給規程 第44條는 戰時 供給義務에 대한 重要한 例外規程(電氣事業法 第14條 所定の 「正當한 理由」에 해당)을 例示하여 電氣事業者의 免責限界를 嚴格히 規程하고 있는 바 同規程은 免責事由로서 需用家의 責任있는 事由로 因한 契約의 廢止, 法令에 의한 供給中止 또는 使

用制限, 非常災害, 其他 洪水, 減水現象, 電氣工作物的 定期點檢, 變更, 故障修理等 管理保存行爲等の 境遇를 例示하고 이러한 事由가 認定되면 相當한 期間內的 停電, 斷電等 措置는 正當한 業務行爲로 보거나 緊急避難, 緊急事態의 豫防等 行爲로 違法性이 저하된다고 할 것이며 이로써 需用家가 損害를 입는 경우라도 이를 不法行爲 또는 契約違反行爲로 볼 수 없어 損害賠償責任은 發生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3) 이러한 免責規程과 民法上的 損害賠償 責任과의 關係를 보면 民法 第750條(不法行爲) 所定の 損害賠償責任은 그 構成要件으로 當事者의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違法行爲이며 民法 第390條(債務不履行) 所定の 損害賠償責任도 역시 債務者의 故意 또는 過失이 重要要件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同法 第758條(工作物 所有者責任) 所定の, 損害賠償 責任도 工作物의 設置保存의 瑕疵가 當事者의 故意 또는 過失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賠償責任이 자 생키므로 韓電이 法令規程等이 定하는 必要한 注意義務를 懈怠하지 아니한 한 民法上的 損害賠償責任이 發生될 리가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기 電氣供給規程 第44條 所定の 理由에 의하거나 同法 第42條2項에 의한 必要한 節次를 履行한 경우에는 完全히 그 責任을 免한다고 봄이 法理上 妥當할 것이므로 停電 또는 斷電으로 인하여 被害를 입은 需用家가 損害賠償 請求를 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免責規程과 民事上的 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한다면 그 賠償責任을 免할 것임은 明白하다.

(4) 결국 電氣供給規程 第44條 規程은 電氣事業法 第14條 所定の “正當한 理由”를 類型化하여 例示한 것이라 봄이 妥當하여 이러한 免責規程은 電氣事業者의 正常的인 企業活動에 불가피한 것이므로 需用家側에서도 受忍義務가 있다고 보이며 이것만으로는 이러한 條項을 當事者間的 不平等契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다만 韓電側로서는 非常災害, 偶發的인 故障等 豫見할 수 없는 停電等を 除外하고는 平素의 設備點檢 補強工事의 施行 등으로 豫防에 힘쓰며 事前計劃에 따라 施行되는 경우에는 需用家에게 充分한 時間餘裕를 주어 事前 對備토록 하고 이로 인한 需用家의 被害는 最少限으로 줄이는 努力을 기울여 해서는 안되며 사용치 않는 電力은 料金收納時 減免하여 주는 등의 事後 對策에 萬全을

期해야 할 것이다.

나. L辯護士의 見解

(1) 電氣供給契約은 民法上 繼續的 供給契約이긴 하나 電氣가 일련의 雄大한 設備를 通하여 供給되고 있는 特質을 가지고 있으므로 供給設備에 故障가 發生하거나 天災地變 등으로 供給設備 그 自体가 損壞되거나 하면 供給이 不可能하게 될 수도 있고 供給設備의 工事上 또는 保安確保上 電力會社가 供給을 一時中止할 必要가 생기기도 하므로 恒常 無停電으로 電氣供給을 한다는 것은 不可能에 가까운 것이고 電氣供給은 中斷될 수 있다는 것이 電氣供給契約의 前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電氣供給規程도 第42條에서 일정한 경우 供給의 中止 또는 使用의 制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規程하고 있다.

電氣供給規程 第44條는 第42條에 의하여 電氣의 供給을 中止하였거나 電氣의 使用를 制限하였을 때 는 損害의 賠償責任을 지지 않는다고 規程하고 있는데 電氣의 供給이 中止되었거나 使用이 制限되었을 때 그것이 電力會社의 責任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란 電力會社에 故意過失이 없는 것을 말하며 第42條가 定하는 供給의 中止 또는 使用의 制限事由는 電氣의 供給이 行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미리 그 發生이 豫想되는 것들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電力會社의 供給債務 自体가 이런 制限 中止를 前提로 하여 成立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電力會社는 信義의 原則에 違反되거나 權利濫用에 해당될 정도로 電氣供給規程 第42條를 濫用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制限 中止의 原因에 있어서 電力會社에 極히 重大한 過失이 있을 경우 라든지 需用家에게 損害를 줄 制限 中止權을 目的으로 發動하지 않는 한 損害賠償責任을 지지 않는 다 하겠다. 요컨대 통상의 企業活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電氣供給規程 第42條에 해당하는 事由로 供給을 制限 中止하였다 하여도 賠償責任을 지지 않는 다 하겠다.

(2) 電力會社가 電氣供給을 中止 또는 制限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것을 需用家에게 周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電氣供給規程에서도 新聞 廣告 등을 通하여 미리 需用家에게 通知하도록 規程하고 있다 그러나 非常災害, 故障 등으로 인한 豫測하지 못한 停電等 緊急 不測이한 경우에는 事實上 事前의 通

知即豫告는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에 豫告없이 停電되었다 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4. 停電時 被害補償에 따른 誘發 問題

韓電의 責任아닌 停電事故에 對하여도 모두 被害補償을 主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序頭에서 본 바와 같이 電力事業은 그 特性上 休停電의 要因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休電에 對해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다고 본다.

가. 不可抗力의인 事故에 의해 發生된 特定需用의 被害額을 보상하는 것은 補償額만큼 電氣料金吸收로 全國民이 負擔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

나. 保險料率을 策定하는 것과 類似하게 需用家別로 波及事故發生頻度와 停電被害額의 規模에 따른 停電피해 豫상액을 감안 需用家 個別 料金水準 決定이 必要하며 또한 피해豫상액을 算出하기는 극히 곤란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 受給契約時 모든 需用家에게 停電에 따른 피해방지 自家對策講究(自家發電機 設置 또는 二重電源供給設備等)義務化時 需用家負擔의 過重을 초래하게 된다.

라. 停電에 따른 피해방지 자가대책의 必要性이 있는 需用에 대하여는 法令上(綜合病院等) 에도 現在 自家發電機設置等 需用家에게 그 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5. 結 論

電力事業의 特性上 一聯의 老大한 設備를 通하여 電力供給이 이루어지므로 完全한 事故豫防은 不可能하다고 여겨진다. 실사 設備事故의 完全한 방지가 된다 하더라도 落雷鳥類事故等 不可抗力의인 停電은 不可避한 實情이다. 따라서 停電으로 인한 需用家가 받은 損害에 대하여 한전의 責任있는 事由가 아니면 免責됨을 전기공급규정상에 明示하고 이를 前提로 現在 電力을 供給하고 있다. 또한 한전의 責任(重大한 故意 또는 過失)이 아닌 事由에 依하여 停電되었을 경우 特定需用家(停電에 따른 被害額이 特히 많은 需用)가 받은 被害額을 補償化하도록 制限化하는 것은 그 豫상액만큼 電氣料金 吸收로 結果적으로 一般需用家가 負擔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停電에 따른 被害額이 많이 發生되는 需用家側에 있어서도 電氣供給中止에 기인하는 損害를 最小한으로 막도록 스스로 努力(자가발전기설치, 전용공급설비 및 이중전원확보等)하여야 하고, 실사 電力會社에 그 責任을 묻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需用家가 損害를 회피하기 위해 어떠한 措置를 講究하였는가 하는 것이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과실상계원칙적용)된다.

그리고 一般電氣事業者인 韓電에서는 電力設備投資의 經濟性을 고려 전력공급中斷에 따른 需用家被害額을 最小化하도록 設備의 補強豫防整備 및 補修의 徹底, 設備運轉技術의 向上等 계속적인 努力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註: 紙面관계로 參考資料는 다음號에 掲載하기로 함〉

